

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정내용

□ 제정사유 및 근거

○ 제정사유

- 재단의 청렴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
- 국민권익위원회 정책 이행 및 서울시 반부패 시책 추진

○ 제정근거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공공기관의 책무)
-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옴부즈만 설치 운영 계획 및 운영 가이드라인

□ 주요 제정내용

구분	주요내용
제1장 (총칙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조(목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○ 제2조(적용범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제외하고 이 기준 적용 ○ 제3조(용어정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옴부즈만’, ‘옴부즈만 대상사업’ 등 용어정의
제2장 (옴부즈만의 구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4조(구성 및 회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옴부즈만은 3인 이내 구성, 옴부즈만 회의를 통한 협의 결정 ○ 제5조(대표옴부즈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호선으로 정한 대표옴부즈만이 회의운영 및 업무총괄 - 대표옴부즈만 부재 시 직무대행자 선정 ○ 제6조(옴부즈만 자격 및 위촉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옴부즈만 자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기술사 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· 재단 사업 관련 분야(법학, 경영학 등)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자 · 국가,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할 사람 · 청렴 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○ 제7조(임기 및 신분보장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옴부즈만 임기 2년, 1회 연임 가능 - 옴부즈만 의사에 반한 해촉 금지, 공석 시 보궐위촉

구 분	주 요 내 용
<p>제 3장 (옴부즈만의 직무수행 등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8조(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옴부즈만의 직무 · 옴부즈만 대상 사업 선정 및 사업 전반의 감시·평가 · 성희롱,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신고자의 요청에 의한 관련 조사 · 위법·부당한 업무처리 시정 건의, 부패방지 제도 개선 건의 · 옴부즈만 협의회 활동 및 교육 참여 등 ○ 제9조(직무수행 방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독립적 직무수행, 반기별 1회 및 필요시 특별활동 - 옴부즈만 회의결정 사항 및 대표옴부즈만 명의로 발의 - 옴부즈만 직무활동과 관련한 면담 및 자료 협조 ○ 제10조(제척·회피·기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척사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당해 사업 참여업체와의 특수관계가 있거나 본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 - 재단은 옴부즈만 기피가능, 옴부즈만은 회피가능 ○ 제11조(겸직금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회·지방의회 의원, 정당 당원, 재단과 거래중인 업체 임직원 등 ○ 제12조(옴부즈만의 의견표명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활동결과로 의견표명, 시정, 개선, 권고 가능 - 옴부즈만 활동결과에 따른 실무부서의 업무처리 ○ 제13조(비밀엄수 및 공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한 임의 공표 금지, 비밀누설 금지 - 옴부즈만 위촉 시 윤리서약서 작성 ○ 제14조(수당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옴부즈만 활동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지급, 필요 지원 ○ 제15조(옴부즈만 협의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옴부즈만 활동상황 및 협조·애로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한 협의회 구성 ○ 제16조(세부운영계획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세부운영계획 마련

시 행 일

- 이 규정은 2016.01.01일부터 시행한다.